

보도시점 2023. 5. 14.(일) 12:00 / 배포 2023. 5. 12.(금) 16:00
< 5. 15.(월) 조간 >

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규제혁신, 지주회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확대 길 열어!

-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

- ◆ 지주회사 소속 대기업 A, “다른 계열회사와의 공동출자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규모가 크게 운영하고 싶습니다.”
- ◆ “최근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기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해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하거나 표준사업장을 7개 회사로 분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간 어렵게 대형화시켜 온 표준사업장이 다시 영세화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.”

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담회, 현장방문 등 발로 뛰며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*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. 고용노동부(이정식 장관)와 공정거래위원회(한기정 위원장)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소유·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·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·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다.

*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·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 금지(공정거래법 제18조)

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% 이상(최소 10명 이상, 기업규모에 따라 중증 일정비율 고용) 고용하고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.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,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되었다.

2022년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,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, 이중 중증장애인이 77.6%를 차지한다.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,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.

※ 대기업 집단 장애인고용률 변화('19→'21): 표준사업장 설립 0.13%p↑ vs 미설립 0.03%p↓

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¹⁾자회사끼리 또는 ²⁾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·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. 다만,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,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% 소유하고,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%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,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.

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,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	책임자	과 장	이부용 (044-202-7481)
		담당자	사무관	이명진 (044-202-7485)
담당 부서 <공동>	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병건 (044-200-4932)
		담당자	사무관	김치열 (044-200-4936)



- (정의)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중증장애인 친화적(물리적, 정서적) 사업장

※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

-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, ②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
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시 15%, 100~300명 미만 시 10%+5명, 300명 이상시 5%+20명 고용
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,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

※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

- ⑥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'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소유'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
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
 - '다수의 모회사가 지분출자하여 설립'하는 경우에는 모회사는 출자지분만큼 표준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

- (현황) '22.12월말 기준 622개소

<단위: 개소, 명, %>

구분	업체수	상시인원	장애인원	중증인원	장애인고용률
합 계	622	25,313	14,407	11,468	56.9
일 반	492	15,756	8,236	6,668	52.3
자회사형*	128	9,490	6,117	4,747	64.5
컨소시엄형	2	67	54	53	80.6

* 지주회사 소속 43개 기업이 총 37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하여 2,940명(중증 2,266명) 규모의 장애인을 고용

- (설립 지원) 작업 시설, 편의 시설,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,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투자금액의 75%까지 최대 10억 원 지원
- 지원금 3천만 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고, 고용의무 미준수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환수
- (판로확대 등 운영지원)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0.6% 이상('23년부터 0.8%)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, 수의계약 가능
- 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(연계고용)
 - 최초 3년간 표준사업장의 법인세·소득세 100% 감면,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
 - '21년도 의무구매 대상기관 861개 기관의 총구매액 5,930억원